

처분 요구사항 조치 결과

(기관명 : (재)청송문화관광재단)

처분 요구 번호	소관부서	제 목	행정상 조 치	처 분 요 구 내 용	조 치 결 과	완결 여부	증빙서 번 호
1	경영지원팀	정기재물조사 미실시 및 자산관리 소홀	시정	재단 규정 제144조(재물조사)와 제145조(재물조사내용), 제146조(조사결과처리)에 따라 '물품관리원은 물품의 수량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재물조사 결과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	정기재물조사실시계획(경영지원팀-2394)2023.11.22. 호와 관련 정기재물조사 실시 완료	여	[붙임1] [붙임2]

※ 작성 요령

- 처분요구번호, 제목 : 처분요구서상 번호 및 제목 기재
- 소관부서 : 총무팀 등 관련부서 기재
- 행정상 조치 : 시정
- 처분요구내용 : 처분 요구서 상의 「처분요구」 내용을 간략히 기재
- 조치결과 : 관련부서에서 조치한 내용을 조치일자,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한 후 관련 증빙서 첨부
- 완결여부 : 완결, 추진중, 미결 등 조치상황 기재